第268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臨時會·閉會中)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7月9日(月)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審査된案件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 1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남원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배 의사일정 상정 전에 우리 구성은 며칠 전에 되었지만 오늘 처음 출석하신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섭 위원 인사해 주시지요.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첫날에 회의에 못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한테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다음에 주성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미안합니다. 김정훈 위원님 제일 먼저 인사하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김정훈 위원 별말씀을요, 김정훈입니다.

이번 해는 대선이 있는 해, 지금 정개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특히 공작정치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

(10시09분)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침에 간사회의가 있었습니다. 간사회의에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이 우리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정말 국회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모두 잘해 주셨지만 모범생들로, 모범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셨지만 좀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서 아주 알찬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된 것은 대통령선거 등에 대비하려면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둘러 진척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각 당의 공식적인 의견 제출을 일부는 받았습니다마는 또 계속 제출받기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각 당의 공식적인 의견 또는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의 계류되어 있는 접수된 선거관계법이 138건입니다.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예, 이것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김기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김기현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법률안 회송 목록을 보니까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인경호법,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대통령경호실법이 또 아마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게 정치관계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넓은 의미에서 대통령선거와 크게 관련된다 이렇게 보는데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소관 불문하고 행자위원회 소관이든지 운영위원회 소관이든지 불문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간사 간에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 아시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부 소개도 해 주시고 정치관계법 개선작업 준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바쁜 의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에게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견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2월 19일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연이어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양대 선거를 통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공명선거 기조를 유지 발전시키고 정책에 의한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이끌어갈 훌륭한 국가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흠 없고 완벽한 선거관리 준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의 선거관리 경험과 정당 및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 단계씩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어느 선진 민주주의국가 못지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에 부응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치관계법이 마련되어 선진정치문화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원만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새로이 마련해 주신 법률에 의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과 내년에 연이어 실시될 양대 선거를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거 결과에 모두 깨끗이 승복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법률이 선진 정치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종우 법제실장입니다.

양금석 공보관입니다.

이정규 감사관입니다.

문상부 선거국장입니다.

오봉진 정당국장입니다.

문택규 조사국장입니다.

김규조 전자선거추진단장입니다.

김현태 선거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법제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조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주성영 위원 제가 와서 현안보고 내용을 봤는데 이 현안보고 내용 이대로 한다면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외국민투표권에 관한 보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것은 저희가 현안보고와 또한 우리 개정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개정의견에도 내용이 없는데 이 보고서 외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당해 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따로 보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조 총장, 이 업무계획 자세하게 보고할 때 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주 위원님께서는 보고 끝나고 질의 때 충분히 좀……

우리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지금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개정의견 22페이지에 해외체류자 부재자투표 실시에 관한 선관위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윤호중 위원 그것 설명하실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법제실장 나오셔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실장 이종우 법제실장 이종우입니다.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선거관리계획, 17대 대통령선거 관리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 그리고 정치관계법 개정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대통령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는 바른 선거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정당 후보자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선거운동 개시 기간 전까지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위탁관리 및 지원과 더불어 예방·단속 활동의 강화 및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는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체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 결정 후에는 포스터 홍보를 통해서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 중점 관리사항입니다.

바르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대국민 선거 정보 서비스 및 투표 편의 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로 준법 선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체제 구축으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중대 선거범죄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니페스토를 활성화하고 범국민적 참여 확산 운동을 전개하여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08년 4월 9일입니다. 모든 선거사무 준비는 대통령선거 관리와 병행하여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준법선거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감시단속반이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개정된 현행 정치관계법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고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언론기관의 입후보 초청 대담, 정치자금의 합법적인 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숙된 국민의식과 선거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분위기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로 이르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그밖에 현행법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비효율성과 입법 미비사항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한 예비후보자 제도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속 당원과 유권자는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 관계자의 어깨띠와 동일 복장의 착용 대상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 초청 대상자가 후보자의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력 후보자와 군소 후보자를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개선과 시청률을 고려하여 중계방송 시간을 법정화하도록 하고, 대담·토론회의 불참 후보자에 대하여서는 방송 연설 등에서 소요되는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다른 언론매체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등의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고,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하는 것은 언론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 중심의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체가 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공표하는 때에는 공정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하여 공공기관은 정책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을 때 협조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선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도 정책공약집을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배부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책공약 비교평가자료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내 경선의 자유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개표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동일한 선거 보도에 대해서 보도 매체별로 각각 기관

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여 상설 심의기구로 하고 동 통합된 심의기구에 선거 보도의 공정성 그다음에 불공정 선거 보도 피해자의 이의 신청, 반론 보도 청구, 여론조사 심의 및 조치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체류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제도 도입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투표 참여자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 부재자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 근절과 절차사무 개선을 위하여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수할 경우에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위원회에 소수정예화된 선감단을 상시 운영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선고를 받은,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받은 낙선자의 경우에도 당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반환된 기탁금과 지급한 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절차사무에 있어서 후보자가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 정보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재보궐선거 시 해당 구·시·군 구역 안에 거주하는 부재자 신고인은 현재 거소투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재자투표소 투표 제도로 개선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당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내 민주화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당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투개표 사무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 등 수수행위의 처벌 규정,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입당시키는 자 또 당비를 임의로 인출하는 자 이런 등에 대해서는 탈법 행위 개선을 위해서 처벌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당활동 보호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당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신설과 정당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치자금법의 관련 사항입니다.

정치자금 조성방법 확대입니다.

현재 대통령선거에서는 당내 경선 후보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어 정치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도록 하고, 지난 12년간 된 미반영된 정당국고보조금의 계산단가를 증액하고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법인·단체도 일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치자금 사무의 합리화를 위해서 후원회의 수시보고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정치자금 영수증 및 당비 영수증의 발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후원금 고액 기부자의 공개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정치자금 모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개시, 정당의 당내 경선 위탁관리 등 촉박한 대통령선거 관리일정과 법 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 사무편람 작성 그리고 대국민 홍보 및 직원 및 선거관계자 교육 등 후속조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논의 사항은 그 개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를 담당할 기구와 투표소의 설치, 재외국민 등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투표의 방식, 선거운동 방법, 나아가 공정선거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선거 기술적인 측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되고 있는 선거 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선진 정치관계 법제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총장, 보고사항이 조금 좀 제가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당면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은 소위의 논의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선병렬 위원 사무총장께서 왜 자꾸 소위 얘기를 해요? 전체회의가 있고 소위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이상배 안 그래도 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선병렬 위원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을 하고 전체회의의 의견을 받아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소위만 해요, 그럼 앞으로?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간 17대 대통령선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접수 내역, 조사 내역, 처리 내역, 이런 것들을 후보별로 또 후보 진영별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한나라당 위원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지금 여러 위원들도 대개 공감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아침에 간사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제안된 138건, 그밖에 또 각 당이나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제의하시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로 가서 또 심의를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간사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보고사항을 몇 가지 이렇게 공직선거법하고 정당법, 정치자금법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밖에도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국민상대경선제라든가 또 허위폭로 흑색선전 예방장치라든가 또 공무원 중립이라든가 또 후보자 사고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인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따라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님.

○주성영 위원 오늘 현안보고 내용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요지와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12월 12일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12일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물론 여야 간에, 정치집단 간의 견해는 다르더라도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외국민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지금 보면 '선거 기술적인 측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여하튼 위원회 운영방향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주성영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다 궁금해서 나와 있을 텐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한다고 그래서 될 문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지금……

○주성영 위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오늘 회의 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뭐든지 일은 열심히 그리고 또 빠를수록 좋으니까 총장께서 최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같은 특위 위원이 되셨는데 아직 인사 못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박세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상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여망이 담긴 그런 시대정신이 정치관계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이쪽에 이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위원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이 갖고 있는 시기적인 어떤 급박성 그리고 또 상황의 어떤 적효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민병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민병두입니다.

정치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또 현실의 어떤 요구 같은 것을 갖다가 다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17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더 추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시간 제약을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분이 하시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울산 남구을의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오늘 현안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의견의 제시가 없습니다. 그 점이 그냥 단순히 오늘 일과성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저는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중앙선관위가 만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기에는 조금 전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22페이지에 마치 재외국민의 투표권에 관해서 일시 해외체류자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작년 12월에 내면서 1년 후에 실시될 선거에 있어서 일시 체류자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한나라당에서 당론 법안으로 영주권자까지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선관위에 재외국민의 경우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된다면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투표를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관위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안 되는 것처럼 했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또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선관위가 눈치를 보면서 줏대가 없이 여기저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6월 국회에서 재외국민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투표권을 주는 것이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기억나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압니다.

○김기현 위원 그 결정이 나기 전에 가능하느냐고 물었을 때 선관위에서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 여권에 속했던 위원께서 막 질책을 하고 왜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강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때 우리 차장이 참석해서 제가 결과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기웃거리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번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논의할 때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실시를 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관위가 눈치를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은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 대선에서 영주권자까지 포함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면 실시에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된다 그러면 우리 선관위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다 전 직원이 붙어 밤을 새면서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어서고 이 임박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마련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국내를 대상하는 선거가 아니고 해외를 대상한 재외국민들 대상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법안이 마련되면 관리에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일시 체류자에 한정해서 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 체류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할 필요성의 실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들이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의 취지는 또 헌재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는 가능한 한 위헌 상태를 개선할 입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결정이 17대 대통령선거 전에 헌법 불합치 상태가 제거되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인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 내용은 봤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외국민의 등록을 선거일 100일 전부터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김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100일로 할 것이 아니라 60일 정도로 하면 40일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 보면 재외의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285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들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나가면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등록된 분들이 95만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60일 정도로 단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결론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그 부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외국민들의 등록을 받아서 현행으로 정비하고 그분들 중에 부재자 신고를 받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일까지 잡을 것 아니고 60일로 단축해서 그 기간에 신고가 안 된 분들은 다음번에 신고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그 부분도 이 선거가 되려고 그러면 대다수의 재외국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그런 해외부재자제도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작년 12월에 낸 개정의견안입니다. 거기 22페이지에 보면 '국외부재자투표는 선거기간 개시 50일 전부터 등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김기현 위원 작년 12월에는 50일 전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60일 전부터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100일 전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때 저희 등록은 우편으로 인한 현지 공관에 등록하는 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검토되는 방안은 6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해외부재자제도를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먼저 우편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투표를 공관에서 하는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 아닙니다. 신고는 우편 신고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을 지금 내놨잖아요, 한나라당에서. 그러니까 100일 전부터 할 것이 아니라 60일 전부터 해도 충분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국내의 해외부재자제도 도입과 다른 게……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질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령 일시 체류자하고 영주권자가 법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기현 위원 법적으로 구분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일시 체류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위원 그런데 영주권을 가진 분 중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김기현 위원 그 숫자가 얼마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김기현 위원 앞으로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현실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이 바로 정돈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일시 체류자에 한정해서만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한다는 것 자체는 입법기술상으로도 선거기술상으로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선상투표 관련해서 선원들이, 이것 지금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벌써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또 본 의원이 당론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선원들의 투표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오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랬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결정이 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것은 이번의 대선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실현 가능한 방안이 지금 일본에서 실시가 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래서 일본 것을 모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게 가능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검토를 조금더 지금 해 보고 관련 기기……

○김기현 위원 팩스도 내용이 가리워지는 팩스가 있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나 그것이 국내 생산이 아니고 한다면 수입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 또 1대당 2500만 원씩 하는 팩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도입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 덜 되었으면 빨리 검토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서두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보고 5페이지에 보면 각종 비방, 흑색선전 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당내 경선에서 위법행위 등 이런 것을 단속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현재,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번 대선에서 특히 한나라당 후보의 경선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의 유포나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공무원, 건교부 공무원과 그리고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내용의 의견까지 제시한 다음에 그것이 고의에 의해서 유출되었다고 하는 자료까지 지금 나타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정 신문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와 관련된 친인척의 재산을 도저히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서 온 신문에 도배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제지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건설교통부 산하에서 대운하 관련 검토보고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상황을 조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 후보자의 재산 관련 부분은 이미 검찰에 고발되고 수사가 착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특정 개인의 수십 년간에 걸친 부동산 거래 내역 수십 건에 이르는 부동산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국세청 자료 외에 있습니까, 국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선관위가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검토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냥 검찰에 넘겨 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게 그러면 선관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우선 당해 정당에서 검증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당내 경선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 착수 여부를……

○김기현 위원 제가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정말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된 얘기입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실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도저히 개인이, 어떤 언론기관도 입수할 수 없는 국세청의 자료가 노골적으로 공개되어서 유포되고 있고 그것이 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그 경위에 대해 조사할 의지조차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말씀 알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론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관위는 당해 당사자들 간의 이의 제기나 조사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또 사직당국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직당국의 조사를 존중해서 선관위가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마침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재외국민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되어진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 숫자를 아까 285만이라고 파악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중에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95만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95만 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190만 명은 만약에 부재자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신원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일단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때 당해 공관에서 여권을 가지고서 일단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등록을 받고 그 등록 받은 여권에 의해서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서 재외국민등록명부에 오른 사람에 한해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호중 위원 재외국민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부재자 선거자격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실제로 285만이 다 투표권을 얻기가 어렵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글쎄요, 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아마 등록이 어렵지 않겠는가, 또 현재 투표소 설치 상황에 따라서 투표가 가능한지 어려운지에 따라서 또 신고율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우편투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 부분입니다.

○윤호중 위원 이를테면 우리 국내 부재자 투표는 우편선거를 하지 않고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서 선관위 직원도 나가 있고 또 거기에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외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도 실제로 공관 투표 또는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직원과 또 선관위 위원, 참관인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보통 영주권자까지 전부 투표권을 준다고 할 때 약 2600여 명의 선관위 또는 지원받은 인력이 해외에 파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공관에서 투표를 할 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유권자가 6000명 정도 단위로 투표소를 구분해서 304개 투표소를 설치했을 때 소요되는 최소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관을 포함한 분소 투표소를 설치했을 때 이런 겁니다.

○윤호중 위원 사실상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거 10여 년 전에 하던 부재자 투표, 우편투표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재외국민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2세, 3세의 경우에 지금 재외국민 등록도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여권이라든가 신분증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등록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내가 되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권이라든지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부재자 신고를 받기 이전에 이를테면 재외국민 등록을 하라는 안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그 등록이 해외에서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선거일 100일 전 부재자 신고라고 돼 있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재외국민 등록을 한 분들에 한해서 투표권이 주

어지게 되니까 재외국민 등록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이것부터 안내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윤호중 위원 그다음에 ‘재외국민 등록되신 분들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려면 제도라든가 선거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든 이후에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9월 21일부터는, 그게 선거일 전 100일입니다. 9월 21일부터는 부재자 신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봤을 때 그 이전에 벌써, 그러니까 8월 정도에는 그런 내용의 안내가 나가서 재외에 계신 분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을 함과 동시에 부재자 신고를 겸해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안내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사실상 285만 재외국민 중에서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공관에 비치돼 있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권을 주자 이게 선언적으로는 참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분들에게 선거권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말이지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들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180일부터 선거운동이 금지가 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거나 또는 댓글을 다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인터넷을 통한 자기 의사 표현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락에 관련된 또는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모든 게시물들이 선거법 위반 상태에 놓여지게 돼 있는데 이것을 네티즌들은 사이버 유신이다 또 사이버 계엄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의견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도록 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아니면 후보자 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불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시 허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선관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희가 사이버검색반을 통해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성격의 내용만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제한 부분을 벗어나서 개별법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라든지 비방죄 이런 부분의 개별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을 자유화하고 인터넷 게시를 자유화하더라도 그 개별조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와 같은 위반행위는 걸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에 미치지 않게 할 충분한 장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장치가 현행법에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선거중립의무를 정한 선거법 규정이 공무원법과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법 개정 의견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국가공무원법하고 선거법 제9조의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하고 충돌된다는데 충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만 그중의 한 부분, 선거 부분에서만 중립을 공무원들이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선거법 제9조는 특별조항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9조 개정 부분은 현재 제9조는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며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제60조라든지 제85조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이런 개별 조항을 통해서 규제·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보도의무를 제8조에서 규정해 놓고 뒤에 가면 각 부분을 구체적인 조항별로 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매수라든지 아니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개별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상 관권선거가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식이 돼야 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뒤에 있는 개별 조항을 통해서 처벌한다면 현행 조항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시간이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한나라당의 김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힘든 결정을 내리고 계시고, 그렇게 선거중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대단히 가지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이번 대선에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결정이 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들 해외에 나가 보시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교민사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권 쪽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번 대선에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 오늘 신문입니까? 보니까 여당 출신 국회의장께서 외국에서,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투표권은 먼 데 있는 교민이 대사관까지 와서 투표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가 가지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이번 대선에 어렵다는 그런 단정적인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서 건의사항에 보면 '특히 재외선거 도입에 관해서 투표소 설치, 재외국민 신분확인절차 등 선거기술 측면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결돼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국회에서 인정을 좀 하라는 식의 비슷한 투에다가,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이렇게 마쳤어요. 그 뒤에 무슨 말을 생략한 것 같으냐 하면, 유추해 보면 이런 과제도 많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이것 적용이 좀 어렵다 하는 말을 빼고 이렇게 딱 이것까지만 자른 것 같은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해서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대로 재외국민 투표권을 시간상 이렇게 촉박하게, 급박하게 진행을 한다면 이번 대선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그 예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예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예단은 안 가지고 있다' 해 놓고 지금 질의를 하니까 '어렵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여권 쪽에서는 전부 어렵다. 이번에 어떻고 어떻고 285만 명 중에 95만 명만 등록이 돼 있고 확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국회의장도 어렵다 그러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도 예단은 없다 그러시면서 어렵다 그러시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뭘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실무·관리적인 측면을 다 짚어 봤을 때요, 기간이 촉박해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신분확인절차, 투표

방식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일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본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에 비추어 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방안을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방안마다 장단점을…… 그것을 하십시오. 이런 투표소 설치를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우리 정개특위에다 보고를 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지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오셔 가지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딱 잘라 버리면 우리가 지금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 예단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재외국민 투표권이 부여 안 되면 결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김정훈 위원 지금 재외국민 투표권이, 285만 명 중에서 몇 명이 투표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국회 정개특위의 첫날 논의하는 자리에서 '안 됩니다'

지금 태도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중앙선관위가 예단이 없다 하면서도 어렵다고 잘라 버리면, 이것은 국회의장도 안 된다 그러지 지금 여당 위원님들 몇 분 발언하실지 모르지만 다 안 된다 그러지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입니다.

국회의장님하고 논의하셨어요, 총장님? 왜 그렇게 나오시자마자 말을 안 된다고 하고 딱 자르십니까? 지금 예단이 없다 그러시면 '이런 이런 점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예단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딱 단정적으로 곤란하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자체가……

○김정훈 위원 이것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벌써 논의도 하기 전에 딱 잘라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께서 물어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6월 말까지 법만 고치면 관리하겠다는 것은 선관위가 재외국민을 어떻게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능력보다는 기일과 또한 이 선거는 재외공관과 협조가 돼서 처리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고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첫째 무엇 때문에 이렇고, 둘째 무엇 때문에 이렇고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재외국민들에 대한 부재자투표권 부여는 우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재외국민 등록을 일제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을 파악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부재자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285만 명이 나가 있고 95만 명 정도의 재외등록된 분들이 계시지만 벌써 입국한 분도 많이 계시고 거기서 시민권 확보한 분도 계시고 상당 부분에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최소 소요되어야지만 재외국민 등록을 안내하고 받아 정비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려면 지역에 투표소를, 해외에다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나라당안 같은 경우는 한 300여 개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소 설치도 아마 외교통상부에서 정돈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구역을 정비하고 정리해서 일정한 선거권자들이 모여서 투표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을 선정하는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재자의 재외국민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부재자 신고가 되면 그에 따른 명부를 관리하고 그분들이 재외국민에 등록되었는지 외교통상부에 조회가 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국내에서 얘기하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범죄사실 같은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법무부, 행자부 이런 관련 부처와도 전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선거권 유무를 또 확인해야 하는 이런 인터넷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법안의 골격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더 이상 이것이 미루어져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가지고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총장님 말씀은 재외국민 285만 명이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285만 명 전체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하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85만 명 전부에 대해서 투표권을 100%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도 잘될까말까,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기존 선관위나 대사관에서…… 그러면 기존 교민들 중에서도 등록돼 있는 분들 또 고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을 알고 등록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이번 대선에 먼저 드리고 그다음 선거에는 좀더 소문이 나고 확산이 되다 보면 좀더 범위가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재외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그 범위를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고가 되어 가지고 알고 있는 재외국민들한테만이라도 먼저 투표권을 부여해 주는 절차를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야지 285만 명 전부를,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것 선거에 재외국민 투표시키지 말자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지로 들리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방안이 있다, 장단점을 정리해서 우리 정개특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총장, 6월에 결정이 되면 할 수 있고 7월에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좀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재외국민 관계 이것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니까 단기체류자—공무원, 상사요원, 선원, 군인 이런 분들—하고 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 이런 분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가 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미리 선입견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은 주지 마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김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별로 검토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간 잘 지켜 주셨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선관위가 17페이지 건의사항에서 재외선거제도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할 때 선거기술적인 측면,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 이런 많은 과제가 있다 했는데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죽 나열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재외선거제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선거문화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또 철학적인 고민, 전문적인 식견 없이 이번 대선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자꾸 예단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예단으로 왜 오해를 받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선병렬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없어서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07년도 7월 3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입니다. 조선일보에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시론을 기고했어요. '재외국민 선거제도, 제대로 알고 실시해야' 읽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봤습니다.

○선병렬 위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적 안목과 전문적 식견이 전혀 정치권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의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면서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재외국민이 조국의 영토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그들의 표가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거주국에 대한 지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가능케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들이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권을 주지는 않는다. 영토와의 밀착 정도를 기준으로 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정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아예 헌법으로 국내에 영주하는 국민만이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정했다.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은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정지시킨다”

국내와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지요. 국내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표합니까?

“영토에 갇혀서 살고 있는 국민과 해외에 영주하는 국민이 관심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재자 투표가 국내 정치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입니다”

비중, 쉽게 말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재자 투표, 해외국민 투표가 이번 대통령선거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경우 해외국민에 투표권을 주자라는 정도지만 이것은 우리 선거문화의 역사를 통찰할 때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정권을 해외국민이 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의 관심와 운명이 해외국민에 의해서 결정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리당략적으로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을 예단이라고 치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부해서 차후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우리가 한다고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나서 우리 국내 정치상황을 재외국민들의 투표와 관련해서 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선거문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통찰하시고 철학적 고민도 좀 하시고 전문적인 식견도 살펴보시고 조근조근 논의할 일이다.

좀전에 이상배 위원장님께서 6월에 되면 안 되고 8월에 되면 안 되냐? 시기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제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선병렬 위원 내년 말입니다. 헌재에서도 이것을 금년 내에 한다고 서둘렀을 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는 선의의 취지보다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한을 내년까지 유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객관적인 현실을 위원들한테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지금 답변에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하셨으면 업무보고서에도 문자로 정확하게 써서 안 된다는 것을, 임채정 국회의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말씀 하신 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정치적인 공방이 될 것 같아서 확인해 봤는데 재외국민들 중에도 투표권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사양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갑자기 투표권을 주었을 때 어떤 혼란이 올 것이냐를 재외동포들과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들도 과연 이 선물을 받아야 옳은지, 국내에서 잘 논의를 해서 안정성 있는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마련해 주도록 촉구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선병렬 위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각각 보도 매체별로 설치·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는 지금 선거라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방송 쪽은 다른 데에서 공정성을 판단하고, 또 신문에 보도된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인터넷에 올라간 부분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선거라는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우리가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항상 강조하지만 선거에 있어서의 각 단위들의 적정한 참여, 그리고 공론화 이런 것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와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담당하고 있는 단위들의 자율적 참여, 이것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우리 정개특위 시작 벽두에서부터 보셨지만 정치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거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선거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시간을 끌면 선거가 끝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저희는 효율성으로 봐서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방송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선병렬 위원 지금 대통령선거도 중요하지만 당내 경선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면서 당내 경선에서의 단체장들의 중립의무 이것을 삽입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의 경선운동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라는, 그리고 지원하고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당내 경선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공정행위, 편파적인 간섭행위 이것 때문에 지금 지방이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이 특히 해당되는데, 당내 경선주자 간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협박이 오가고 지역의 자생단체 회장들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우리 선거관리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상황과 일정들을 모두 파악해서, 밀착해서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위법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안내를 하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하되,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도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최근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내부고발에 의존해서 조사하고 고발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되냐 그러는데 지금은 권력기관 이런 데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내부자 고발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에도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현재 범죄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제보를 해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런 제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정황 수집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선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한나라당에서는 전원 나오셨는데 나경원 위원은 오늘 처음 출석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야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다 함께 이 정치개혁특위를 하게 되어서, 특히 또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개특위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 모두 헌법과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정말 모든 선거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원칙하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보고에 관해서는 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거다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님들 달게 받고……

○張倫碩 委員 그렇게 인정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바로 준비해 보고를 더 올리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오늘의 현안은 사실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중점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밖의 선거법 개정 관련 사항은 이미 작년에 제출한 것이니까 개괄적으로 보고하면 됐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이 보고서 17쪽을 보면 그래요. 재외 선거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심도 있는 논의야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과제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집중적인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다음 전체회의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재외국민들 부재자투표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또 선원에 대해서 부재자투표…… 가까운 일본에서도 하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일본에서의 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 방법은 다 연구 검토가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30초 안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선원에 대해서 투표권을 줄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일본에서는 먼저 출항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자기가 출항하고 앞으로 배에서 선상 투표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나가게 되면, 선거 때가 가까워 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를 확인하고 거기다가 투표용지를 팩스로 보내 줍니다. 투표용지를 배로 보내 주면 선상에서 선장 감독하에 투표를 해서……

○張倫碩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간단해요. 법 개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선관위가 일본 사례를 그대로 도입해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지요. 어렵지 않은 일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또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를 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한 나라만 간략하게 30초만 보고해 주세요. 어떤 나라가 이렇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우선 저희가 제일 가깝게 본받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들이 한 104만 정도가 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년 후의 선거부터 적용을 해서 실시를 한 것이 최근 일본의 선례입니다.

○張倫碩 委員 그렇지요? 그 나라는 준비하느라고 2년이 걸렸지만 다해 놓은 나라의 제도를 도입하면,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좀 보완해서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총장께서 자꾸 다른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시니까 질책도 좀 받았는데 이다음에 일본 사례를 그대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 가지고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낸 해외 체류자 부재자투표, 이것은 어때요? 언제까지 개정이 되면 선관위 개정사항대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하기로는 금년 2월에 법을 개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가 지난해

12월 12일에 안을 냈습니다.

○張倫碩 委員 이 해외 체류자 부재자투표 실시 안대로 하면 선거기간 개시일 50일 전부터 신고를 받으면 되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張倫碩 委員 그러면 50일 전이라고 하면 아마 10월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선관위가 내놓은 이 안은 한 9월까지만 개정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데 지금 그것대로 답변드리기……

○張倫碩 委員 실무적인 준비는 선관위가 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곤란한데,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했던 방안은 우편으로 선관위에다 바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또 인터넷, 팩시밀리 신고 등 이런 방법이 가능했는데 정초에는 검토된 것이 공관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총장께서는 너무 어렵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여튼……

○張倫碩 委員 자,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났으니 이렇게이렇게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이렇게 준비하면 어떤 점이 부족한데 이것은 국회 또는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안을 내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올리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이다음 전체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리고 현안보고를 보니까 중대선거범죄, 후진국형 선거범죄는 선관위가 감시도 하고 또 단속도 하겠다, 이것은 반드시 고발을 받아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거기에 보면 중요 선거범죄 중에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들어 있어요. 어떤 게 비방이고 어떤 게 흑색선전 행위입니까? 예시를 한번 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비방·흑색선전을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후보자를 폄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들을 종합한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다른 어떤 후보에 관해서……

○張倫碩 委員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나라당의 경우에 당내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당의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어요.

한 당에서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데 그 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타 당에서 타 당의 경선후보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것 전형적인 비방이고 흑색선전 아닙니까? 남의 당 후보에 관해서 저 사람 언제 어땠더라, 재산이 어떻더라, 이것 비방 아닙니까, 흑색선전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그러면 관련 조항을 들어 처벌할 수 있겠지만……

○張倫碩 委員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최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을 모르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가 볼 때……

○張倫碩 委員 이렇게 물어볼게요.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한 당의 경선후보에 관해서 타 당 구성원이 이러쿵저러쿵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것 지나친 선거 개입, 관여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통상적인 정치활동, 정치적인 공방 이런 차원으로도 저희가, 또 정당 대 정당 간의 정당활동으로 서로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쪽으로 좀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도 같이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張倫碩 委員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금도를 넘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타 당 후보에 관해서 '한방에' 이런 식의, 그것 비방 아닙니까?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도 중앙선관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쯤은 한 번 줄 수 있을 거예요, 경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꼭 그것을 인신공격이다, 비방이다 해서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선관위가 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공당이 타 당 경선후보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가 여기 오늘 보고를 많이 냈잖아요. 바른 선거하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은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주의의 촉구는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지금 그런 관련 자료들, 발언 내용들을 전부 수집해서 어느 단계의 도가 넘어설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와 자제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전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중앙선관위에서 타당 경선후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른 당 관계자들이 발언한 내용을 죽 모니터링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 모니터링해 온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발언 중에서 이 정도는 혹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이것은 굳이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꼭 흑색선전은 아니라도 정치 도의상 금도를 넘는다, 이것은 좀 자제를 촉구한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해서 이다음 전체회의에서는 그 모니터링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면 이다음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본 위원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이다음 전체회의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다음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은, 현안보고 3쪽을 보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사전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미 지난 사항입니다.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대해서 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사전 안내활동을 하고 예방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여의도에다가 대선 공명선거 지원단을 파견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정당의 궁금한 질문사항에 대해 1차 답변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張倫碩 委員 됐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면 그 정당에 대한 안내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가급적 자당 후보 간에도 비방이나 흑색선전, 인신공격 행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정당에 대해서도 타당 후보에 관해서는 인신공격, 비방, 흑색선전 행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사전 안내, 주의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못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것들은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수용 문제가……

○張倫碩 委員 아니요, 수용하지요. 다른 당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라 하는 것을 수용 안 할 어느 정당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도 간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張倫碩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 안내기간에는 못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에서는 각 정당에 대해서 제발 자기당 경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타당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고 개입하고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하지 말아 달라는 주의 촉구를 좀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하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장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일 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샌드위치의 계절이 돌아왔지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하신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아마 잘못했다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하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외동포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 이 문제를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 기억으로는 D-162일입니다.

○양형일 위원 162일 남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양형일 위원 지금 우리 정개특위도 활동을 하고 여야가…… 지금 여야는 없지요. 여기에 참여하신 각 당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것을 입법처리해서…… 지금 7, 8월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스케줄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앞에서 예단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에 시간이 너무 없다는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 가능성, 뭐 집행을 어떻게든지 하라 그러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날짜의 범위 내라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가능성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양형일 위원 지난 7월 2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4당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그리고 민노당이, 여기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한나라당 대표로 나오셔서 KBS 열린 토론에서 100분 동안 이 문제를 서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시면 각 당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을 여실하니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미 다 짐작하시고 계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바로 현안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 선거권 부여, 그다음 또 하나 이것은 제, 사무총장의 사견이지만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부분, 그다음에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표 인센티브제 방안, 그리고 정치자금법 분야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확보의 길을 터주는 것, 한 네 가지 정도가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현안이 되고 있는……

○양형일 위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업무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시민들,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받는, 인터넷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시위가 선관위 앞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비난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기술적 발전에 따른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유포되어지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또는 불법성, 위법성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선진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셨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외국에서는 인터넷 선거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법제에다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가 좀 특별한 케이스로,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양형일 위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서 이 용어가 자꾸 등장하는데 '공작정치, 공작정치' 하는 얘기,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공작정치 얘기를 하던데 그 공작정치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선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 규정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양형일 위원 공작정치 그러면 과거 기준에 볼 때 권력기관의 개입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요체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역사적으로 하나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적으로서 본 위원은 권력의 정치적 중립지대화, 예를 들자면 과거 정권에서 정치 도구화했었던, 도구화된 권력을……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기무사, 국세청 이런 5대 권력기관이라고 그럽니까? 이 권력들을 권력자가 호주머니 속에 넣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도구화했었던 것을 우리는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의 하나의 공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 권력들을 정치적 중립지대로 보내 놓고 국민의 권력으로 변환시켰다는 점, 이 점은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형일 위원 글쎄, 동의한다고 그랬다면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또 질책이 많이 쏟아지겠지요.

○선병렬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생각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양형일 위원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과연 권력기관이 개입한 공작정치, 이것은 시대를 한참 뒤로 돌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 처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인식과 정서 설정에도 대단히 유해스러운 용어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가 자꾸 난무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있는데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를 두어서 후원금을 모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 안을 내놓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냈습니다.

○양형일 위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이른바 예비후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주말로 66명인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활동 상황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대선주자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놓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선거 출마운동을 하려 하지 않은가 해서 밀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만 해 놓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양형일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 이런 점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보 난립에 이게 일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 그리고 만약 후보 난립과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목적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 내지는 자신의 어떤 이름 알리기식의, 지금 범여권 후보들 가운데서도 그런 후보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이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수반되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클 수가 있는데 그 점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의견을 검토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누가 정치자금을 주겠느냐, 정치

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출마의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에게 후원금이 모이지, 그런 분들에게 모이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냈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도 이번에 기회가 되면 그런 통제가 좀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양형일 위원 우리가 어떤 정책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중간에 속한 그 효과를 마지널 이펙트(marginal effect)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백적 효과 또는 마지널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정치자금을 주겠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치사기가 됐건 결혼사기가 됐건 사기범죄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참고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양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잘 지키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그냥 간략간략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대통령 출마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본 선거에 출마하는 대통령후보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지요, 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떤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활동 비용은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법·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즉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일단 현재 정치자금법에 보면 이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대통령후보 활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70여 분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다만 그 비용을 자기의 비용, 자기 사비를 쓴다든지 이런 비용을 쓴다 그러면……

○이인영 위원 사비로 써도 그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개인이 쓰는 사비는 정치자금법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사비면 다 괜찮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받아서……

○이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비상식적인 것 같으니까 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제도는 이번 특위에서 정치자금법, 좀 손을 빨리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선관위가 생각하는, 정당의 후원회가 지금 폐지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일부 정당에서는 지금 부활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이인영 위원 선관위 판단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난번 2004년도에 소위 이른바 말하는 개혁입법 차원에서 많은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당의 후원회 제도를 막았습니다마는 정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정당이 활동이 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국민 정서상 2004년도에 법을 바꿨는데 몇 년 사이에 법을 바꾸는 것,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 선관위에서는 개정안을 내면서 법인·단체 같은 곳에서 현재 기부행위를 못하는데 선관위를 통해서 기탁을 하면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로 나누어서 똑같이 모든 정당에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나누어 드리겠다, 이런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선거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추세인데, 자유로

운 어떤 선거활동의 보장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쪽으로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또 시대적인 추세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행 제도와 인터넷 관련 제도가 강화되기보다는 과거와 똑같이 변화가 없이 나가는 것과 반대로 나가고, 법은 변화되지 않는데 네티즌들의 사고라든지 국민의 의식은 많이 개방되고 열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는가, 폭을 넓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요, 그게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또 전 사회적으로도 그럴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18대 국회 초기에 논의하는 것들이 정치권의 합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인데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 개정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 선관위는 지금 과거와 달리 근래 들어서 헌법 개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고 해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 법은 9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선거제도에 익숙되어 있는 국민들하고의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국민투표법은 현행으로 정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이번 정개특위에서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관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선병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선거방송, 선거기사, 인터넷 선거보도, 이렇게 세 가지로 심의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것을 지금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3개를 그대로 놔두는 것과 통합했을 때 장단점이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우선 저희가 현실로 봤을 때 3개를 나누었을 때, 선거에 대한 위반 여부는 빨리빨리 결정이 나야 합니다. 이게 미루어지면 선거 끝난 후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먼저 불공정한 보도를 한 쪽에서 유리하고 피해 입은 쪽은 복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공익성을 판단하고 거기서 위법 사실,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흑색 선전이 있었을 때는 바로 위법조치를 하는 등 이 부분은 처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속도에 있어서는 그게 한편에서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것으로 하는 게 좋으냐 공직선거법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속도에 있어서는 긍정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제 폭에 있어서요, 대상·폭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사무장·회계책임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에 한정되어 있다면 언론중재나 피해구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그 폭이 더 넓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나 뭐 이런 차원으로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 그 폭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지금 묶어주고 상시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게 선거일을 선거기간 기준으로 12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 이게 선거 관련 발언이 그 앞전에도 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한시적인 부분을 상시, 재보궐선거가 상시 4월·10월에 있고 또한 국가단위 선거가 사이사이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선거 기조를 유지해야지 120일 안에 들어오면 위법이고…… 전에는 심사하고 검토할 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놔 둬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통합이 되어서 상시운영이 됨으로써 선거문화를 바로잡아서 운영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말하자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좀 시정하자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건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당의 국민경선 내지는 당내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선관위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규칙으로 구체적인 것은 정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위탁관리규칙이 국민경선 등의 어떤 기본 취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규칙이 정해지기보다는 그런 상위법의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차원으로 그 규칙이 정리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표소를 시군구로 한정해서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선거인명부를 후보등록 직후로부터 해 가지고 순차적인 명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물론 그건 당에서 자체로 하면 허용되고 보장되는 겁니다마는 선관위에서 위탁받을 시에는 그것이 위탁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 단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선관위 규칙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법에서 허용한 정신을 선관위가 가진 규칙에서 지나치게 제약해서, 말하자면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규칙을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 선관위에 위탁을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공선법의 규정 정신을 따르고 규정 내용을 저희가 준용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한 면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한 선관위 관리능력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선관위 구·시·군에 가면 아시겠지만 직원 적은 데는 5명이 있고 서울 시내에 12명씩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서 읍·면·동까지 갈라서 투표관리하는 것은 공정 확보 차원에서, 그렇다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 제도를 만들었다……

○이인영 위원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려 보겠는데, 행정구역 단위로는 시군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선관위가 가지는 선거구 내지는 투표구의 개념으로 하면 대통령선거구, 광역단체장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시군구단체장 선거구 그다음에 시도의원 선거구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이인영 위원 선관위가 준용하는 어떤 기준은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구, 이것으로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군구 말고도 이미 선관위는……

죄송합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일반 4대 선거 말고 공직선거의 진행 과정에서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가동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관리능력을 실현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쪽으로 공당이 개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더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차로 모셔와서 투표하게 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런 동원식의 투표 작풍들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차적인 명부확정의 문제들도 저는 동시투표만을 상정해 가지고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에서 좀더 개방해서 순차적으로, 투표가 일어났을 때 순차적인 명부를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같이 열지 않으면, 실제로 앞의 순차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앞의 순서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적겠지만 한 달 정도 뒤에 순차를 타 가지고 투표하는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품·불법 선거를 조장하는, 그 대상으로 그대로 노출하는 이런 부정적인 작용들도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시는 게 저는 온당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의 위탁사무업무와 관련한 관리규칙 그것은 개정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규칙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법 개정을 검토하시고 제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님 뜻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규칙을 만들 때, 위탁선거를 받은 게 사실 이번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이 제일 큰 선거이고 그전에 큰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말씀, 현장에서 나온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제도개선, 규칙으로 수용할 사항은 수용하고 법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정치개혁특위에다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6월 7일자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조치, 그리고 18일자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조치 이런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 이를 취소해 달라' 이런 청구취지로 낸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렇게 안다니요? 지금 심판청구서가 송달 안 됐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게 송달되었고 그렇게 봤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송달되어서 지금 청구서를 다 열람하시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피청구인이 됐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피청구인이 되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답변서 제출했습니까? 그 요지가 어떻습니까, 답변서의 요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답변서의 요지는 저희 선관위에서 한 것은 이미 헌법 선례와 판례에 있는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각하나 기각을 청구하는 그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 마땅히 기각 아니면 각하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그 답변서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청구내용을 보면, 참여정부평가포럼이라는 데 가서 강연을 했고 또 원광대학교 명예박사 수여를 받는 자리에서 연설한 내용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참여했다, 이런 게 청구취지와 어떻게 보면 청구이유의 요지이지요? 개인이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만 해도 개인 국회의원과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 이게 참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대통령이면 어떻게 국가와 민족 앞에 전폭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 가서 군수 정도의 직책에 있는 사람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것은 개인적인 위치에서 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참 주민이 그것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소장을, 심판청구서를 받아서 읽어본 소감이 어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좀 기가 막힌 것 아니었어요? 예?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총체적인 그런 어떤 권리, 이런 것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헌법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것 권리의 남용 아닙니까? 소권의 남용이

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적정히 내릴 것으로 봅니다.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재외국민 투표 부여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여기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도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는 말소된 분들은 등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현실적으로 100% 완전하게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재외국민들한테 참정권의 기회를 제한하는 그런 사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주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리고 등록이 안 된다든지, 재외국민으로서 등록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안 된 것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개별통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공시 정도 해서 '선거권 부여에 어떤 기회가 있으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등록하는 사람한테 선거권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절차적으로 복잡할 게 있습니까? 뭐가 현실적으로…… 100%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조리 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 정신은 좋은 거지만 현실적인 한계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현실적인 한계라는 것 때문에 권리행사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겠다 그런 어떤 논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니, 절대 저희들이……

○박세환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뭔가 전말이 전도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한계야 분명히 있는 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행사라는 게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권리가 부여됐으니 행사하십시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권리 부여의 전제요건이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논리를 어떻게 앞세울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재외국민들 모두에게 선거권 주는 것 원초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또한 국민들이 전원, 해외 재외국민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다수의 많은 참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시일적으로, 빨리 주고 싶지만 시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에 저희가 한계에 부딪친다, 그런 점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세환 위원 그래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판시 내용을 읽어보면 하여튼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라라는 것 아니겠습

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렇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박세환 위원 그런데 뭐 현실적인 한계만 자꾸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에서 내부경선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내부경선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보면 정말 행정기관에서 외부로 쉽게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변동 상황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료입니다. 현재 보유현황도 아니고 20년 전 이때에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팔았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 이전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본 것 같은, 본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작성되어 있던, 권력기관에서 작성되어 있던 어떤 그런 보고 문건, 이른바 최태민의 무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소·고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얼마나 선거풍토를 흐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면서 공정선거관리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염불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항간의 이러한 모든 문제점 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박세환 위원 뭐 모든 것이에요? 한 다섯 여섯 개밖에 더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 때문에 각 기관 간에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관위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한테 제보가 되고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다고 그러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방침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행자위를 한 1년 떠나 있다 와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에서 많이 논의된 부분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헌법불일치 판정을 한 만큼 우리 선관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회의에서 우리 선관위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그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선관위가 작년 연말부터 국외부재자투표연구반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현재 위원님 앞에 놓여져 있는 지난해 12월 12일 드렸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저희가 상정했던 방안, 즉 해외에

서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팩스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을 공관에서 투표할 때는 공관에 나가 투표하는 이런 방안은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고 한 정도였습니다.

○정진섭 위원 외교부하고, 외교통상부라고 그러지요, 지금은. 외교통상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 오셨지요? 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충분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외교부의 참여를 촉구를 했고, 특히 근래에 들어서 6월경에는 여야·당정이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선관위가 국내에서 준비할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재외, 해외에서 투표소 설치라든지 주민들의 등록문제랄지 재외국민에 대한 명부확인 문제, 이런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촉구해 왔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위를 한 1년 떠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연구반이 연구해 놓으신 내용 또 외무부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이라고 다 선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선거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우리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등재가 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출발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고 우리 국회가 나서서 무엇을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회의까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다음 아까 우리가 논의된 내용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내 경선을 맡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한나라당의 경선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경선문제를 맡아주시는 데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이인영 위원이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 관리 규칙 개정에 마치 의향이 있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의 경우에 당내 경선을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몇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투표소의 설치를 읍·면·동으로 하자고 저희가 부탁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까 이인영 위원이 조금 잘못 말씀하신 거고, 아주 선거구가 넓게 떨어져 있는 데는 시·군·구에 하나만 설치해서는 어려운 데는 한두 군데 더 해 보자 그런 협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아, 그러면 그 규칙에 따르겠다, 왜? 그 규칙에 의해서 경선을 받아 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은 이 규칙에 의해서 경선을 하는데 이 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다른 당의 경선위탁을 받으신다는 뜻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 되신 말씀인데요. 오히려 지금 한나라당에서부터 만들어진 공선법에 당내 경선규정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당내 경선 관리 규칙 이 두 규칙을 벌써 한나라당이 적용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는 이 부분을 못 고친다, 다음 이번 선거를 다 경선 끝나고 치른 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후에 법과 규칙을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보지만 이번 대선 때까지의 당내 경선은 현행 있는 규정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뜻으로 말씀 올렸는데……

○정진섭 위원 경선을 위탁할 때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서 위탁해야 된다, 그 기간은 30일 이

내여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투표소의 설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규칙에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다음에 투개표의 방법은 현재 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이것이 다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변경은 이미 경선이 시작했으므로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총장님이 지금 확인하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선에서 각종 자료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박세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지금 총리를 지내신 어떤 분의 홈페이지에 우리 후보 한 분의 과거와 관련된 확인되지 아니한 문건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요.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정원에 이것을 확인 요청한 결과 '국정원이 생산한 자료는 아니다—이것은 국정원장의 이야기입니다—그러나 국정원이 관리하는 자료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국정원이라고 명칭이 바뀌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하는 자료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관리하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총리를 지낸 그분의 홈페이지에 뜰 수 있었는가? 이것은 분명한 자료 유출의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 이런 명확한 증거가 제시돼 있는데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이라든지에 나타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증거가 확인되면 조사하겠다는 말씀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증거를 제시해서 저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들, 사직당국 이런 쪽에서 조사를 착수하거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선관위가 다시 조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고발권은 있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어떤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것은 수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고발권의 한계 부분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이미 사법기관도 공히 알고 있는 사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지금 우리 선관위는 본선뿐만 아니라 경선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 이번 경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홈페이지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한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관위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후보자 간에, 정당 간에, 피아 공방을 주고받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자체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각 기관별로 기능을 분배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는 것과 똑같은 언론보도의 정황밖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도 인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선관위보다는 사직당국에서 판단해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자, 총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국정원이 관리한다고 하는 그 문건이 총리를 지낸 특정인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의 유출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 자료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그 문건을 보지를 못했고 중요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난 내용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삭제가 됐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진섭 위원 오늘 보고하시면서도 공직자들이 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공직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유출될 수 없는 이 문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침을 천명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거나 조사 요청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올렸지만 저희도 공지된 사실로밖에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오히려 사직당국에서……

○정진섭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선거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다만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자료가 접수가 되고 저희한테 그런……

○정진섭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실 용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정진섭 위원 아니,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조사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현상변경을 금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기타 조사 요청을 수사기관에 하거나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된다고 판단되는 입후보예정자 측이나 정당으로부터 조사 의뢰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저희 당에서 바로 조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정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외체류자의 부재자투표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해외체류자의 부재자투표 실시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와 있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선관위에서 검토한 것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앞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의 주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보면 저희는 부재자 신고 방법을, 우편과 이메일을 통한 또 팩시밀리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이런 방법을 전제로 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해 왔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로 단기체류자에 대한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인명부까지 흔들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중 나가 있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개정의견을 냈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이 된 재외국민의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지난 12월 12일에 연구한 부분은 전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외부재자 투표를 이번 대선에서부터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체류자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저희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는 단기체류자나 영주권자를 구분할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체 분야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기술적인 분야와 공정성 확보 분야,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간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 공정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하기 싫어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먼저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해외에서 부재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재외국민명부가 아마 전산화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명부가 전산화되어야 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접수된 해외선거인명부하고 재외국민명부가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이 가능해야 하고요. 또한 헌법재판소라든지 법무부 행정자치부 이런 쪽을 통해서 범죄사실 확인이라든지 거소 확인, 또 주민등록 호적과의 일치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분야의 기술이 1차 어렵다는 문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열리기 때문에 삼백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재외부재자 국민투표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삼백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치외법권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설치하는 장소 구획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재외공관에 있는 직원들은 선거에 대해서 아무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훈련과 또 국내에서 파견 나간 인력을 확보해서 일정 수준의 궤도로 끌어올리는 교육훈련, 또한 나가 있는 분들에게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됐을 경우에, 한다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관련 자료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연구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이 한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단기체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50일의 시간을 산정하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훈련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재외국민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이 제일……

○김현미 위원 현재 재외국민명부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285만 정도의 재외국민이 있다고 외교통상부에서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만 명 정도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미 외국에 갔다가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현지에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상당부분이 현행으로 정비가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285만 중에서 95만 명이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명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귀국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김현미 위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외국민명부는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뭐하지만 실무자선에서 얘기했을 때는 짧아도 이삼 개월 정도는 정비기간이 었어야 한다고 그렇게……

○김현미 위원 준비기간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정비하는 기간이.

○김현미 위원 정비기간이…… 그러면 재외국민명부 만드는 데 이삼 개월 걸리고 이후에 훈련하는 데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면 마치 이것을 하기

싫어한다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어느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다음회의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의 행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서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해외거주자까지 투표를 하는 것도 좋다고는 보는데 칠팔십 억을 들여 가지고 해외거주자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기권방지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다 이런 질의를 하신 한나라당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거든요.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난해 9월에는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고, 제가 그때 사무차장 시절이고 총장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했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호열 총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때 한나라당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칠팔십 억을 들여 가지고 해외거주자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 기권방지 운동에 그 돈을 사용을 해서 투표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당 경선후보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후원회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일 경우에는 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당내 경선을 하기 이전 후보의 후원회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제출돼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정치자금 분야에 보시면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대통령후보 입지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개정의견을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대선 예비후보들이 다 불법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많은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하나가 다른 당의 경선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나라의 선거법 같은 것을 봤을 때 다른 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선거 사례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제가 그런 사례는 기억이 없고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전 세계에 이런 유례는 아마 현미경을 들고 보셔도 없을 겁니다. 어느 당의 후보가…… 예비후보가 됐건 본선의 후보가 됐건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언론과 타당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당의 예비후보들도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에 대한 검증을 예비경선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본게임에서만 해야 된다 이것은 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은 그 또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을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선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무슨 후보에 대한 비방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허위사실 유포인지 비방인지에 대해

서 조사를 하시는 자세,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고 이것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지금 막 철회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흑색선전이다 비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선거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이 판치면 안 되게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이 흑색선전인지 비방인지 조사해서 검찰에 이첩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합니다.

아까 모 캠프의, 한나라당 모 후보의 국정원이 관리하는 문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국정원이 관리하는 문건이었는지 문건의 진위를 가리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유출됐는지 가리는 것, 이것이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무작정 검찰이 손댈 때까지, 검찰에 고발했다가 금새 또 취소해 달라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것,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부정선거 예방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특위에서, 국회도 휴회 중에 지금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모두 서로 당끼리 무슨 대립적인 그런 얘기는 좀 피하고 우리 특위 중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성영 위원 주성영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위원들 질의를 들어 봤겠지만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보고를 누락한 것이 표현의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중앙선관위의 실시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12월에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다짐을……

제가 오늘 회의 중에 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아까 물었는데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재 아직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회의가 있을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다음회의가 어떻게 잡힐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내로, 다 준비돼 있을 거예요. 내부 검토가 다 돼 있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까지 특위 위원들 전부에게, 일단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는 것이고, 또 올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자세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세월 기다리다 보면 10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1차 보고서를,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벌써 나왔으면 이런 쓸데없는 논의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대선이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마는 개표 문제와 관련해서, 총장님 지난 2월에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 지난번 대선 개표와 관련해서 총리하고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총론은 얘기하지 않고……

선관위에서는 올해 대선 개표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표 때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이 분류기는 그 자체 내에서만 분류가 되지 이것이 어디 인터넷망에 연결돼서 그 결과가 바로 전송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 가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류하는 기계이고 그 분류하는 기계를 거쳐서 수작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들이 확인하고 종사원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 위원장까지 확인이 끝난 개표의 결과를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개표를 해 왔습니다.

지금 벌써 네 번의 큰 전국 단위의 선거뿐만 아니고 각종 재보궐선거 또한 각종 소송 등 검증 과정을 통해서 기계의 정확성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전수 육안 수작업 검사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내가 총장님하고 지난번에 했던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가 점심을 먹고 여기 들어올 때 어느 언론인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전자개표 한 것이냐? 수개표 한 것이냐?' 그랬더니 '전자개표 한 것 아니냐'고…… 우리 국민들은 다 전자개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용어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제어용 컴퓨터, 또 보고용 컴퓨터, 집계상황표, 그다음에 관우정보기술의 제안서, 또 SK C&C의 제안서, 그다음에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서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자개표에 관한, 278조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입 내용 이런 얘기를 내가 다시 여기에서 해서 지난번 개표가 전자개표였는데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로 우기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지나간 얘기니까.

다만 그 당시에 100매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올 연말 대선은 그야말로 전자개표를, 여기 조직 규정표에 보면 전자선거추진단도 구성돼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전자선거추진단이 정말로 전자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 의미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만 사용을 해서 100매 묶음 단위로, 지금 총장께서 얘기한 대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것은 변명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주체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수개표 법안을 내놓은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던데 거기에도 물론 총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기로서 사용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컴퓨터에 전송할 때 방식을 택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선관위에서 지난번처럼…… 178조였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178조입니다.

○주성영 위원 178조에 의한 개표가 아니라 278조에 의한 개표를 택하든지 아니면 178조에 의해서 정확한 수개표를 하든지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들은 위원님께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성영 위원 물론 이 문제는 아까 총장님께서 소위원회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안심사가 될 때 자세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총장께서 오늘 답변하신 가운데 우리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에 관한 자료가 타 당 후보의 컴퓨터에 떠 있다, 왜 조사가 안 되느냐? 또 우리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에 대한 내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돌아다니는데 선관위는 어떤 액션이 없느냐 하는 이런 투의 질의가 여야 위원들로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주성영 위원 거기서 아까 총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당 내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또 그다음에 우리는 고소·고발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나라당 내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선관위로부터 그러한 사무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 내의 검증위원회가 선관위 사무총장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당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주체적으로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집행하고 변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래서 한나라당 내 검증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므로 그쪽에 맡긴다, 우리는 고소·고발권밖에 없다라는 얘기로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이 총장님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들에게 절대로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공개되는 사안들이, 그 사실 자체가 특히 허위 사실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사자의 어떤 반박에 대한 그런 주장과 함께 저희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부분 외에는……

○주성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물론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정진섭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모 야당 경선후보의 컴퓨터에 떠 있는 그 자료는, 국정원장이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산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 쪽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정진섭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착수해야 될 부분인지의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태세를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시간이 딱 맞았네요.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일본이 재외국민 투표를 인정한다고 그랬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병문 위원 일본 재외국민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재외국민이 104만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또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잠깐 제가……

○지병문 위원 재외국민 투표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세계에서 한 90여 개국이 재외국민 투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OECD 국가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대개 재외국민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우리나라 말씀입니까?

○지병문 위원 아니,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배 위원장, 안경률 간사와 사회교대)

○지병문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될 텐데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 우리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빨리 통과시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재외국민, 예를 들면 국적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한다고 볼 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285만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우리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쪽에 유리하든 간에, 유리하고 안 하고는 투표해 봐야지 지금 얘기대로 유리하고 말고 그건 정해지지도 않은 거고. 어느 쪽에 유리하든 간에 투표를 285만 명이면, 과거 우리가 97년이나 2002년 대선을 보면 당락을 100만 표 차이로 얻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과연 해외에 가

서 5년 10년씩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느냐, 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재 판결의 경우에도 지금 선거법이 국외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단기체류자의 경우에 유학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야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해외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계속 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헌법불일치 판결이 났을 때 그 헌법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이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법만이 불합치 문제,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무조건 재외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문제에 얽매이니까 자꾸 시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법이 안 바뀌어서 못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외국민들의 경우에 특히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서 계속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회에 적응하고 그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과연 이분들이, 수백 만 명이 투표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옛날에 말이에요, 유신 때 이럴 때 보면 해외에서 한인회 이런 데 회장하면 전국구 비례대표 하나씩 주고 해 가지고 교포 사회가 얼마나 분열하고 시끄러웠습니까? 또 지금 우리 국내 선거의 경우에 부정선거가 엄청 심한데 과연 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 가서 일본 가서 따라다니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선거운동 한 것, 그것 잡을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 본질적인 문제, 과연 우리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고 과연 이분들이 투표권을 갖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냐, 그게 헌법 정신이고 국민의 합의이냐 그러면 진행할 수 있지요. 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니까 무조건 이것 법 개정 해 가지고 해소하면, 선관위는 시간만 주어지면 하겠다…… 그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고민 해 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지병문 위원 무조건 다 주라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투표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우리 헌법 정신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면 헌법을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이에요, 재외국민들이 285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가 정말 우리 국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정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볼 때에 밖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무조건 재외국민,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전부 주는 게 국민적 합의면 하지만 '아니다,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헌법을 바꿔서 국민의 뜻이 그러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병문 위원 그다음에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대통령선거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은 인기가 없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요, 국회의원들 재산등록 그것을 보면 후원금을 모금해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넘겨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정치자금으로 넘어오면 국회의원 명의로 이게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신고하면 재산에다가 넣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후원금 많이 걷은 분들은 전부 재산 늘어난 것으로 돼요. 재산 신고할 때 그냥 재산은 재산대로 두고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정치자금 회계보고로 별도의 금액으로 관리가 되지……

○지병문 위원 아니, 재산 속에 같이 집어넣는다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계산 안 되고…… 잘 모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후원금을 재산수입으로 잡는다는 그것은……

○지병문 위원 정치자금을 재산으로 같이 합계한다니까요. 제가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것은 별도의 회계보고로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보다, 옛날에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요금 선거가 중요해지고 공정성도 중요해지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기관화하고 있다. 선거법 관련해서 물으면 해석이 다 달라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다 달라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워크숍을 하든지 자료집을 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소위 선거법을 해석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농협이랄지, 농협 또 국립대학 총장 선거 이런 선거들도 다 위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 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지병문 위원 그것 별로 열심히들 감시·감독 안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농협, 수협 선거도 엄청나게 많은 부정 비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국립대학총장 선거도 마찬가지에요.

국립대학총장 선거도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겼는데 처음부터 그것 받는 자체를 소극적으로 싫어하더니 요새 국립대학총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맡겼어도 과거와 똑같은 식의 선거운동이 아주 볼썽사납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점검을 해 보세요.

(안경률 간사,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위원회마다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르다는 부분 이런 부분의 지적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부를 개편하면서 법규 안내실을 설치하고 기구를 확대해서 신속히 답변하도록 하면서 지방위원회에서 답변 곤란한 부분은 중앙선관위에 문의해서 일관된 답변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질의하는 부분들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것, 시도 선관위에 질의하는 것,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는 질의 내용이 똑같아야 하는데 질의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으려고 질의하는 사례도 많이 적발된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법규 안내는 신속히 하려고 법규 안내실을 확대해서 개편 운영을 하고 특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해석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라든지 축협, 수협, 산림조합 또 총장 선거들을 보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져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그 선거도 공직 선거 이상으로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중 지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인기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인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중 질의 순서가…… 최인기 위원님 지금 질의 가능하십니까?

○최인기 위원 시간 주시렵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중 예,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의 나경원 위원입니다.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 읽어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봤습니다.

○나경원 위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금년도 대선에는 어려우니 법 개정해서 내년까지 하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금년 대선에도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가능하다면 하라는 취지입니다.

○나경원 위원 가능하다면 하라는 취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잘 읽어 보셨네요. 거기 보면 "결정의 취지는 가능한 한 위헌 상태를 개선할 입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결정이 제17대 대통령선거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헌법불합치 상태가 제거되는 개선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가능하면 빨리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에 선관위에서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특별히 한 조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전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거에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분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구분이 필요 없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부재자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외교통상부와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업무들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해 보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공식적으로 회의라는 명칭을 붙여 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또 방문하고 그쪽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이런……

○나경원 위원 아니, 금년이라도 가능하면 하려면 그런 제도를 다시 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도 보고서를 내시고 계속해서 작년 12월에도 조사를 해 보시고 올 6월에도 보고서를 내셨는데 그렇게 현안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안 가져 오신 것을 보면 도대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선관위가 제대로 된 노력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접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결정의 취지를 제가……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오늘 이것 안 가져온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잘못 읽었나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도를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관위가 6월에 국회에다 제출한 서류를 보면 6월까지 개정이 되면 될 것 같이 말씀하셨지요, 그때는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7월 초입니다. 지금 7월에 개정이 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12월 12일……

○나경원 위원 중복되게는 대답하시지 말고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로서는 최고의 마지노선을 6월 국회까지 봤습니다.

○나경원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 등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렇지요? 등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어차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상 등록이라는 것은 꼭 선거를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등록에 관한 법에 의해서 원래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재외동포들도 등록을 해태했고 그리고 외교부도 이러한 부분을 독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5만 명 중에서 90만 명 내외가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등록이라는 것은 별개 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법 절차에 따라서 등

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등록 부분은 빨리 따로 독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맞습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위원 그런 부분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과 소요 기간 등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실무적으로 타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촉구도, 빨리 외교통상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기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촉구를 하신 서면이 있다면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서면보다는 구두로 저희가……

○나경원 위원 그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뭡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가능한 빨리 위헌 상태를 해소하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그냥 구두로 했다는 것은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 여부에 대해서는 질의 문서를 외교통상부에 보내 놨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적정한 시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러니까 해외부재자 등록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 재외국민 등록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나경원 위원 아니 작년에 마지노선이 6월이라고 한 것은 이미 재외동포가 등록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을 다 계산하시고 날짜를 잡은 것 아니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체류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주권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폭이 넓어졌습니다.

○나경원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285만 명 중에서 95만 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는데 여기에 단기체류자 퍼센티지가 더 높다든지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기체류자가 장기체류자보다 등록시키는 데 훨씬 유리하다, 사실상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서류로 해 주시고요. 외교부에서 시간이 얼마 드나 이런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 독려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단기체류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자꾸 단기체류자만 하자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단기를 구별해서 했을 경우에 등록 외에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윤호중 간사, 이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단기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가 있는 분,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헌재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구분의 필요성이 없고……

○나경원 위원 일단 그 구분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전체를,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그 부분 자체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사실상 무슨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은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등록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조치를 하시고 그 조치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 대선은 사실 어느 대선보다 더 혼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이 허위인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꼼짝 안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선관위에서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이

혼탁하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대선에 사실상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서류들이 지금 마구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국가 기관이 보관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어디 발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횡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서류를 유출한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들어가서 그 서류를 적어도 절취해 온 것은 아닙니다.

대운하보고서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또는 국정원의 X-파일이라든지 지금 돌아다니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서류들이 왜, 어떻게 해서 돌아다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서류를 유출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법 위반 여부는 공무원들이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또 특정 캠프에다 그런 자료를 빼서 주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 중립의무 위반,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 이래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나경원 위원 선거법 위반 맞지요? 선거 중립의무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것이 명백하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 열린우리당 쪽에서 주민등록등본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런 위장 전입 부분도 주장을 했고요. 또 모 의원 홈페이지에는 국정원의 엑스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먼저 당사자들의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나경원 위원 아니, 당사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유출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 명백하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자료 유출한 것 아닙니까, 절취하지 않은 이상. 그렇다면 그 자료 유출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가 그런 유출된 자료들, 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선관위는 반드시 고소·고발이 있어야지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조사합니까? 선관위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직권으로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선관위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관위가 도대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모든 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올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조사를 감당한다는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관위가 세세히 다 들어가서 못할 수 있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제출을 해 주어야지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관위가 지금 직무유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대선에 그런 의지로 선관위가 해 갖고는 이번 대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도 고발권이라는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정당이 고발을 해야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시지요. 선관위는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이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지금 많은 것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왜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 IP 조사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당 보고 고소·고발장을 내

라는 것은 선관위는 선거에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했는지, 착수하시면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기 위원 전라남도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인기입니다.

먼저 사무총장님 요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참 공약 실천운동(매니페스토운동), 여러분 개정안에는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규정 신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민간단체에 위촉해서 정책선거운동을 선도하도록 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자위원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매니페스토운동에 참여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매니페스토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공정성,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를 보완해라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개정의견에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기 위원 13페이지 다번만 내가 봤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만 있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라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것은 법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매니페스토운동을 빙자해서 참여했던 단체들 중에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단위에서는 굉장히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글쎄, 내가 어디 사례까지 알려주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 법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것은 심의 과정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최인기 위원 선관위에서도 그것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특히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선거 이런 때에는 장하고 관련된 보조금 단체는 중립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최인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들을 나름대로 각 정당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국민경선이다 해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곳은 정당이 주체여야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정당이 아닌 일반국민의 대표자라는 형식을 취해서 거기에서 국민경선을 주관해서 추진하겠다, 후보를 모집하고 모든 일반 국민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행 선거, 공선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등록된 정당……

○최인기 위원 만 가능한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국고보조금을 요하는 등록 정당만 선관위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선관위 위탁을 못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최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정당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특정단체나 정치적인 모임의 이름으로 국민경선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후보를

모집하고 거기에서 국민을 상대로 경선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현행……

○최인기 위원 대통령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탁 관련 규정은……

○최인기 위원 위탁이 아니고, 저는 위탁은 묻지도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위탁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규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최인기 위원 누구, 정당국장 어디 안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오봉진 정당국장 오봉진입니다.

○최인기 위원 금방 총장 말씀이 맞는가요?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오봉진 아니, 국고금 배분 대상 정당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아니, 나는 위탁은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왜 자꾸 위탁을 이야기하십니까?

특정 정치결사체가, 정당이 아닌 결사체가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라는 목적하에서 대통령후보를 공모를 하거나 후보를 접수하거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중에서 누구를 대통령후보로 냈으면 좋겠습니까를 일반 국민에게,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와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행위가 가능하냐,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정당법 위반인지 아닌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오봉진 그것은 정당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냐.

좋아요. 여러분 내가 법을 찾아본 것으로는 그와 같은 정당 활동에 준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후보를 국민경선 방식으로 치르고 하는 것은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문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총장님 아시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내부 토론을 좀 하세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후보가 당내에서 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당내 경선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선관위가 적발해서 경고를 하거나 또 지적하거나 그리고 사법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의 전체 목록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일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두 차례 걸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크게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선관위 조치에 의하면 그것이 뭡니까? 경고입니까, 주의입니까, 권고입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저희 선관위로서는 두 차례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경고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최인기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선관위 조치규정 구분이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이를테면 경고다 주의다 이런 용어의 정의라든지 조치의 정의에 대한 것이 선관위 내부에는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주의, 경고, 시정 이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정의까지……

○최인기 위원 그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그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경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경고로 봐야 된다, 경고면 경고를 하셔야지. 공문으로 내고 뭐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로 봐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선거법 제9조 중립의무가 처벌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

문에 저희가 '경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재촉' 이런 쪽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런 것은 좀 개념규정도 바꿀 때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안이 세 번 반복이 된다면 그때에는 검찰에 고발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할 것인지, 지금처럼 세 번째도 공문만 보낼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된다면 앞에 일어났던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이것은 사무처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판단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부분과 같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서 조치 수준과 대처 방안 등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우리가 통상 처벌을 하는 이유는 또 그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징벌적 의미가 있지만 하나 더 큰 것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모든 징벌이……

따라서 두 번이나 위반했고 세 번째 할 때에는 저는 그것은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고소를 당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검찰 고발을 분명히 해서 사법적 진행을 해야 되고 퇴임 후에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최인기 위원님 아주 시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경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 위원 안경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가 모처럼 결정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결정과 관련해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총장님하고 위원들 간에 설전도 있었고 때로 다른 반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결정이 우리 선거사상 대단히 획기적이고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사실 인정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경률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헌재가 결정한 뜻을 정치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선관위가 어떤 그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그 분야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직원들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몇 번이나……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구내에서 자체적으로.

○안경률 위원 자체적으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지금 우리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과에다가 인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같이 과원들하고 하면 10명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4명, 10명으로 늘렸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외부에 있는 직원들 4명을 더 추가해서 기존에 있던 과하고 합쳐서 10명의 직원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률 위원 그런 인원 가지고 정말 턱도 없으리라 봐지는데요.

우선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인정을 하더라도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이 문제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기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투표소가 당에서 낸 안을 보면 한 300여 개나 되는데 이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신분 확인

하는 절차 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식을 놓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인 측면이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투표권을 빨리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안경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권을 부여해서 투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간단치 않다,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많은 위원들이 총장님의 그런 대답에 대해서 흔쾌히 납득을 못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에 다시 우리 위원회 총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선거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법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단 어떤어떤 조치를 해야 실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하는 두 가지 경우, 또 그리고 어떤 법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이런 문제를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목요일까지 저희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경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권조사하는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또는 허위의 사실을 폭로해가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관계를 못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후보들이 명백하게 대통령후보로 후보 등록을 한 이후입니다. 그렇지요?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후보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쩌면 또 보호도 해야 되고 감시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이나 감시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아까 나경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연히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제시해 주면 하겠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선거 풍토를 개선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필요하다면 선거 시에 특별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얘기 중에 농협, 수협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 누대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직접선거하는 중에서 농협이나 수협 같은 곳은 대의원으로 하는 간접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안경률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선거 풍토를 바루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대선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아울러서 목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확실한 의지와 또 구체적으로 재외교포들의 선거권을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더 질의를……

○김기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그러면 김기현 위원님……

○김기현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재외국민의 경우에 단기체류자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관위가 작년 12월에 50일 정도의 기간만 주면 등록이 된다 그래 놓고 지금 거기에 영주권자까지 포함되면 100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재외국민이 영주권자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신고를 해야만 선거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신고를 하면서 여권을 부치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부에서 등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5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정했다면 그 기간 중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일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납득을 하려 해도 선관위가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핑계대고 빠지는 것이다, 우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50일 기간을 주면서 등록을 하게 할 경우에 왜 영주권자까지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것은 분명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총장님께서 아마 충분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당 이외의 다른 단체가 내부에서 경선을 한다 이래 가지고 후보자를 세운다 이런 것은 우리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제57조의2에 정당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7조의3에 당내경선운동에서의 선거운동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이메일하는 것, 명함 배포하는 것, 그리고 현수막 붙이는 것, 홍보물도 한 번만 보내는 것 이런 형태로 아주 극도로 제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아닌 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제한도 없이 무작정 다 한다고 하면, 정당이 경선할 때는 아주 제한을 하고 정당이 아닌 일반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사전선거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인데 아마 착오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다음에 답변하실 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예, 최규성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최규성 위원 ……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주성영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주성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각 교섭단체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그것이 제일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저도 그것을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6월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면 실시가 가능한데 그 이후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월 국회가 7월 3일에 끝났는데 3일에 통과되었으면 되고 그다음에 7월 중에 또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전제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7월에는 본회의가 없고 국회가 없다 자꾸 이런 전제를 하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그런데요, 꼭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는 7월 중에도 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자꾸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무슨무슨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얼마씩 걸리고 이런 자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목요일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다음회의 날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 제안된 법률안이 138건이 있고, 또 각 정당에서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각 특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이틀 여유를 가지고 또 우리 특위 입법조사관실에서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회의는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들이 모두 합의를 하셨고, 그래서 다음회의 때는 우리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기현	김정훈	김현미	나경원
민병두	박세환	선병렬	안경률
양형일	윤호중	이상배	이인영
장윤석	정진섭	주성영	지병문
최규성	최인기		

○출장 위원(1인)

정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식
기획조정실장	조해주
법제실장	이종우
공보관	양금석
감사관	이정규
선거국장	문상부
정당국장	오봉진
조사국장	문택규
전자선거추진단장	김규조
선거연수원장	김현태

【보고사항】

○의안 회부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4. 6. 28 안명옥·김영숙·배일도·김영덕·김충환·허태열·나경원·김정훈·장윤석·박순자·유정복·이계진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4. 7. 2 박병석·최철국·김현미·정문헌·구논회·백원우·권선택·이근식·김석준·김영덕·유기준·정성호·김희선·김태홍·정청래·이목희·김춘진·최재천·김동철·홍재형·강기정·이영호·심재철·노웅래·선병렬·최용규·유시민·정화원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태환 의원 발의)

(2004. 7. 7 김태환 의원 외 32인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2004. 7. 7 조성래·황우여·김성곤·최재천·구논회·강길부·신국환·염동연 의원 외 10인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4. 7. 12 정장선·박기춘·조성래·김선미·노영민·원혜영·안병엽·최인기·심재덕·유정복·조경태·신국환·이근식·오제세·문석호·김원웅·우제항·문병호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4. 7. 12 노웅래·박찬숙·강창일·김재홍·정성호·유시민·김원웅·박병석·이종걸·이상경·노영민·최용규·이화영·염동연·김부겸·이시종·이근식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4. 7. 15 박영선·정성호·박찬숙·이원영·정문헌·정청래·김원웅·최인기·류근찬·강기정·김형주·심재덕·이미경·노현송·최용규·이철우·노웅래·이계안·송영길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4. 7. 16 박병석·이시종·오제세·유필우·지병문·양승조·강길부·권선택·정성호·이철우·신중식·안상수·박기춘·구논회·류근찬·선병렬·박상돈·최재성·김형주·장복심·최용규·서재관·노현송·박재완·김양수·김태홍·김원웅·이은영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 7. 20 정성호·유시민·김기석·김동철·노현송·이철우·김선미·조성래·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2004. 7. 26 김형주·구논회·김우남·김원웅·김태년·김태홍·노영민·노현송·문석호·박상돈·백원우·복기왕·신중식·심재덕·오영식·오제세·원혜영·유선호·윤호

중·이광철·이기우·이근식·이상경·이원영·이은영·임종석·장경수·장향숙·정성호·제종길·조경태·조정식·주승용·최용규·최재성·최재천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04. 7. 30 김희정·박승환·정문헌·박형준·황우여·신중식·정병국·이상경·이영호·김태환·이상득·박계동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2004. 8. 5 문학진·이은영·이근식·홍미영·조성래·오영식·선병렬·정청래·이미경·김태홍·장경수·안민석·김원웅·김재원·박명광·원혜영·정성호·송영길·최재성·노현송·유선호·유시민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04. 8. 11 김희정·노현송·이군현·안상수·이원영·김기현·이상락·노회찬·주승용·배일도·정종복·유선호·권철현·정문헌·이기우·윤건영·박재완·김명주·심재철·김태환·정화원·김학송·이상득·심재덕·유기준·신국환·김양수·이성권·박형준·원희룡·정병국·이계경·진수희·안홍준·권오을·정두언·김충환·김석준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5. 4. 11 장향숙·이기우·이근식·김한길·유필우·허태열·유선호·엄호성·장윤석·전재희·김영춘·최재천·이시종·최구식·노현송·이혜훈·김태년·최인기·강혜숙·유승희·윤호중·정화원·신국환·임종석·유정복·이원영·진수희·정장선·이해봉·안민석·김재경·서혜석·박영선·김태홍·김재홍·현애자·박재완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6. 30 김충환·김재원·유기준·안상수·이혜훈·김재경·이성권·강재섭·박재완·임인배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이계진 의원 대표발의)

(2004. 9. 10 이계진·심재덕·박세환·김영숙·이군현·정몽준·이해봉·박재완·진수희·배일도·이근식·김영춘·이인기·김정훈·허태열·허천·정문헌·김우남·문학진·고진화·이강두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4. 10. 11 유기준·고진화·권오을·권철현·김명주·김형오·맹형규·박승환·박형준·안경률·안명옥·안홍준·원희룡·유승민·이성권·정문헌·정화원·정병국·주호영·진수희·진영·최구식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2 홍준표·이명규·이군현·배일도·황진하·고경화·박종근·김재경·박순자·이인기·김문수·김정훈·임태희·이재오·박성범·박계동·이상득·송영선·김애실·김석준·이해봉·권영세·정문헌·박창달·최병국·홍문표·허천·고흥길·김재윤·김기현·김맹곤·김재원·장복심·박혁규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2004. 12. 1 심재덕·강봉균·강창일·권선택·김기석·김낙성·김명주·김문수·김선미·김성곤·김영춘·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태년·김태홍·김혁규·김현미·김희선·노웅래·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순자·박찬석·변재일·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신학용·안민석·안병엽·양승조·염동연·오제세·우제창·원혜영·유승희·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경숙·이계안·이계진·이광철·이근식·이기우·이목희·이미경·이상경·이상락·이상배·이시종·이용희·이은영·이재창·이호웅·임종석·장복심·정덕구·정몽준·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성태·조일현·최규식·최용규·최재성·최철국·홍미영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一部改正法律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05. 3. 25 서병수·김재원·이명규·김정훈·유정복·김태환·심재철·김석준·안경률·박승환·허태열·유기준·안병엽·이혜훈·정의화·이계경·김희정·서재관 의원 발

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05. 5. 25 유정복·김종률·이해봉·김태환·노웅래·이혜훈·이인기·황우여·고진화·이재창·김영춘·이시종·박세환·유기준·박성범·엄호성·허태열·서재관·안상수·유승민·안경률·권오을·정두언·공성진·정성호·김재홍·유필우·박재완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

(2005. 6. 17 이근식·박계동·엄호성·서재관·안병엽·유승희·강길부·최인기·윤원호·오제세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05. 6. 20 유승희·김희선·장복심·이용희·서혜석·최순영·임종인·이호웅·손봉숙·이상민·한명숙·홍미영·이미경·강혜숙·김현미·김영주·이경숙·윤원호·장향숙·조배숙·박영선·이은영·이계경·이계안 의원 발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봉 의원 대표발의)

(2005. 6. 29 이해봉·박종근·전여옥·신상진·고경화·엄호성·이윤성·심재철·김석준·김충환·이경재·정병국·류근찬·안상수·김재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

(2005. 8. 5 한광원·이시종·심재덕·박찬석·박찬숙·김선미·이영호·조일현·서병수·조경태·신학용·정봉주·이원영·김태홍·강길부·노웅래·우제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005. 8. 8 우제항·강창일·노현송·박기춘·심재덕·서재관·이근식·이시종·이호웅·우윤근·우제창·조일현·최인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논회 의원 대표발의)

(2005. 8. 16 구논회·신기남·정봉주·권선택·유시민·이인영·김태홍·한병도·김희선·박찬숙·선병렬·김춘진·주승용·임종석·김명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05. 8. 23 이재오·박계동·이재웅·심재엽·김재원·김영숙·정두언·안경률·김덕룡·정갑윤·이진구·심재철·정병국·이승희·신상진·이종구·맹형규·이인제·김충환·박진·이혜훈·최병국·정형근·김문수·엄호성·홍준표·이군현·박성범·진영·김희정·유기준·고조흥·공성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5. 9. 9 심재엽·김효석·홍준표·한화갑·김부겸·이상경·김정훈·이용희·김희선·김광원·맹형규·유기준·허태열·김명주·김종률·신중식·이인제·김무성·김정부·이계진·김병호·이근식·정병국·이강두·이성권·김동철·이정일·이혜훈·박상돈·김낙성·이인기·주승용·홍재형·권오을·임종석·권경석·신국환·고흥길·이방호·김춘진·변재일·이상배·조일현·노영민·임인배·김우남·엄호성·진수희·허천·안병엽·김영덕·고조흥·김정권·곽성문·신상진·정진석·안상수·이해봉·염동연·김낙순·권선택·서상기·류근찬·전여옥·박찬숙·이명규·이경재·박종근·최연희·김성곤·고경화·홍문표·김학송·박세환·김재경·서재관·심재덕·안택수·김충환·김재원·최인기·박계동·최경환·장윤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0 양형일·염동연·강창일·박기춘·김영주·김동철·원혜영·우윤근·주승용·이정일·지병문·최규식·정두언·김태홍·유인태·강기정·이상열·노영민·최인기·우제항·정화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4 박재완·윤건영·이계경·엄호성·나경원·박순자·박찬숙·이혜훈·이주호·안경률·김정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진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20 이계진·윤건영·조일현·엄호성·김재원·심재엽·이재오·안상수·배일도·정문헌·이강두·김정훈·박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1 맹형규·배일도·박계동·전여옥·배기선·최인기·황우여·이주호·심재철·정병국·진수희·김재원·김광원·정희수·신상진·정화원·김충환·최경환·이혜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7 이인기·황우여·엄호성·김정권·정병국·이해봉·안상수·김재원·이혜훈·권경석·권오을·고흥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15 이인기·김정권·이해봉·심재철·김종률·윤건영·신상진·이주호·정병국·나경원·노현송·엄호성·고조흥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8 최규식·강창일·김재홍·홍미영·조성래·장복심·박기춘·양형일·지병문·이재창·원혜영·서병수·김무성·고흥길·이영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 의원 대표 발의)

(2005. 12. 5 김형오·심재철·이인기·정병국·유기준·엄호성·장윤석·김광원·박재완·안상수·황우여·안병엽·권영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05. 12. 14 유기준·김재원·이인기·이해봉·엄호성·이주호·정성호·우제창·임해규·박찬숙·안상수·박재완·이근식·김태년·박세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2005. 12. 30 정청래·배기선·엄호성·김재윤·노현송·이해봉·황우여·이화영·이시종·심재철·이광철·윤원호·안민석·이미경·임종인·김재홍·이영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

(2006. 1. 20 박기춘·노현송·강기정·이시종·강창일·정성호·박상돈·우제창·우제항·김동철·최규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

(2006. 2. 7 김한길·이낙연·천영세 의원 외 159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06. 2. 10 김재원·김성조·김재경·박희태·안상수·엄호성·유기준·유승민·윤건영·주호영·홍문표·황우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06. 2. 10 유기준·이해봉·엄호성·박재완·김재원·정진섭·곽성문·박상돈·윤건영·박성범·공성진·고경화·박세환·이인기·나경원·신상진·정병국·안경률·김무성·김충환·유승민·안상수·김기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 발의)

(2006. 3. 17 엄호성·진수희·정병국·이방호·안경률·박재완·심재엽·김기춘·김재원·유정복·이군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발의)

(2006. 3. 24 이재오 의원 외 125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 발의)

(2006. 3. 27 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06. 3. 28 이낙연·공성진·김재원·김태년·김효석·박재완·박찬숙·신중식·안병

엽·엄호성·유기준·이근식·이영호·임해규·주호영·지병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6. 3. 28 심재철·이계경·김정권·이해봉·임태희·이성구·주성영·임해규·공성진·김충환·주호영·안병엽·박찬숙·박재완·엄호성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 발의)

(2006. 3. 29 노영민·우원식·조일현·신중식·주승용·이호웅·이시종·우윤근·조경태·윤호중·박상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2006. 4. 3 공성진·박세환·심재철·안상수·장윤석·황우여·이인기·임해규·배일도·박계동·이경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 발의)

(2006. 4. 6 양형일·유인태·원혜영·김동철·이목희·조성래·강창일·염동연·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2006. 4. 7 강기정·김동철·박기춘·장향숙·이인영·홍미영·정성호·김선미·김영주·문병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06. 4. 10 서병수·정갑윤·유기준·전여옥·김충환·김정권·안경률·강재섭·배일도·이주호·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항 의원 대표 발의)

(2006. 4. 11 우제항·강창일·김선미·박기춘·변재일·양형일·우제창·원혜영·이시종·조성래·최규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4. 12 문병호·박기춘·정성호·장향숙·강기정·김동철·안병엽·조성태·김성곤·유필우·제종길·조성래·장복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발의)

(2006. 4. 18 이재오 의원 외 124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2 임인배·공성진·김석준·김영선·김태환·박재완·박형준·안명옥·안상수·엄호성·이계경·이성권·이인기·이해봉·정갑윤·최구식·황우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3 양승조·김명자·엄호성·박기춘·노현송·김성곤·황우여·박상돈·이혜훈·이근식·이영호·심재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 발의)

(2006. 5. 25 임종인·장경수·노영민·한광원·박찬석·유승희·박기춘·정청래·제종길·김재윤·우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5 이상배·김광원·이계경·곽성문·임인배·이영호·황진하·김영선·신국환·이시종·김성조·심재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5 이상민·김선미·김원웅·김재윤·박상돈·신학용·유승희·이영호·제종길·최재성·한광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6. 6. 19 심재철·유기준·김명주·김재원·엄호성·주성영·이혜훈·황진하·이재웅·전재희·김충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 의원 대표 발의)

(2006. 7. 4 장경수·박기춘·장복심·엄호성·이인기·정성호·박상돈·이경재·정화원·제종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06. 7. 11 김영주·임종석·장향숙·이인영·홍미영·문병호·최성·최용규·홍재형·김덕규·박기춘·이미경·한병도·최재성·노영민·김선미·윤원호·김춘진·김현미·이시종·김교흥·김낙순·정청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발의)
(2006. 7. 21 이상민 의원 외 14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 발의)
(2006. 7. 25 유기준·김무성·엄호성·김태년·주성영·정문헌·양형일·황우여·박상돈·박세환·정동채·안상수·이인기·고조흥·신상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06. 8. 4 이종걸·김재윤·정병국·박상돈·김종률·엄호성·서재관·안병엽·강기정·이시종·홍창선·염동연·변재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06. 8. 18 신상진·신학용·박명광·김태년·정화원·이계경·유기준·이해봉·황우여·정갑윤·박상돈·안상수·김영선·박재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06. 8. 29 주승용·구논회·김동철·김재윤·박상돈·심재덕·우윤근·이시종·이인기·장복심·홍재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 발의)
(2006. 8. 31 이상배·안상수·안택수·임인배·김광원·황우여·정형근·곽성문·엄호성·김태환·정문헌·이인기·이계경·안병엽·신상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06. 9. 6 유승희·노영민·류근찬·김춘진·조정식·서갑원·최철국·김종률·김근태·김태년·이원영·강성종·홍창선·안병엽·우원식·최규성·한광원·이계경·정장선·이미경·이은영·문희상·이경숙·우제창·제종길·유선호·오제세·홍미영·김낙순·최규식·구논회·이인영·민병두·유기홍·김교홍·정봉주·최재성·윤원호·안민석·장향숙·김덕규·박상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 발의)
(2006. 2. 10 홍미영·유승희·장향숙·이미경·김현미·최규식·박세환·엄호성·김태년·조성래·이원영·고진화·우제창·안명옥·강혜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9. 8 이영호·강창일·조일현·정문헌·신학용·안병엽·김선미·문병호·유기홍·정성호·한광원·이시종·임종인·이광철·최규성·김우남·지병문·백원우·유승희·제종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6. 9. 11 심재철·주성영·황우여·곽성문·안병엽·이군현·이재오·고조흥·공성진·전여옥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 발의)
(2006. 9. 29 주성영·안택수·황우여·배일도·김광원·김태환·임인배·김석준·김기춘·이계경·선병렬·임종인·이상민·이상경·문병호·박세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 의원 대표 발의)
(2006. 10. 11 김혁규·강봉균·강성종·강창일·강혜숙·곽성문·권선택·김교흥·김낙성·김낙순·김동철·김명자·김선미·김성곤·김영숙·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종인·김춘진·김태홍·김학원·강길부·김현미·김형주·노영민·노웅래·노현송·류근찬·문희상·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서혜석·선병렬·송영길·신국환·신학용·심재덕·안병엽·안영근·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오제세·우원식·우윤근·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선호·유재건·유필우·윤원호·윤호중·이광재·이근식·이기우·이상경·이상민·이상배·이시종·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인제·이화영·장경수·장복심·장향숙·정덕구·정동채·정몽준·정성호·정장선·정진석·제종길·조경태·조성래·조성태·조일현·주승용·채수찬·최용규·최재성·한광원·한병도·홍문표·홍미영·홍창선·황진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

(2006. 10. 17 이시종·심재덕·노영민·이은영·한광원·김혁규·권선택·서갑원·오영식·우제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7 김성곤·우제항·김명자·박재완·박상돈·안상수·주승용·이인기·장복심·유재건·유선호·조성래·정성호·정의화·최성·김덕규·이은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6. 11. 7 이시종·노영민·김진표·이상열·김종률·민병두·우윤근·이계진·한화갑·김혁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

(2006. 11. 8 이인영 의원 외 139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민병두·이은영·김영춘·이경숙·정청래·김우남·선병렬·김재윤·박찬석·이시종·박영선·조성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9 김기현·황우여·유기준·이인기·곽성문·정병국·안상수·황진하·이성구·심재철·이계경·한선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7. 1. 3 최인기·채일병·이해봉·김효석·신중식·김낙성·이낙연·김송자·이상열·손봉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7. 1. 8 강창일·임종인·이영호·안영근·김재윤·정성호·김우남·박기춘·노현송·김태홍·이인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7. 1. 18 박병석·신학용·배기선·김영주·최인기·박상돈·김원웅·정장선·문석호·선병렬·김태년·황우여·고흥길·유기준·정갑윤·나경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 18 박찬숙·박세환·유기준·이성구·심재철·이경재·이해봉·고흥길·김석준·맹형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7. 1. 24 정두언·임태희·이인기·서재관·한선교·이군현·김정권·이재오·정갑윤·권경석·이계경·안경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덕룡 의원 대표발의)

(2007. 2. 1 김덕룡·김무성·김영선·박진·안명옥·안홍준·유기준·이원복·이해봉·이혜훈·정종복·정진섭·주성영·최구식·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선 의원 대표발의)

(2007. 2. 8 배기선·강성종·강창일·권오을·권영길·김교흥·김동철·김선미·김재홍·김진표·김종률·김효석·노현송·문학진·문희상·서갑원·서혜석·신국환·우제창·이광철·오영식·임종석·윤호중·이은영·원혜영·양형일·장복심·정의화·최재성·최성·홍창선·우원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2007. 2. 9 지병문·윤원호·정청래·우상호·김재윤·김영주·신학용·배기선·최규식·안민석·김교흥·김현미·김희선·서혜석·윤호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2007. 2. 9 노현송·강창일·김낙순·양형일·이인영·강기정·심재덕·엄호성·이인기·우제창·김우남·김부겸·한광원·신중식·김동철·류근찬·제종길·이병석·조경태·이강두·황우여·김영덕·최성·박기춘·김재윤·김재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7. 2. 14 김기춘·이종구·권경석·황진하·최병국·김용갑·이해봉·박종근·최연희·정두언·정갑윤·유기준·황우여·이재창·안경률·김학송·박희태·안홍준·최구식·김영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 의원 대표발

의)

(2007. 2. 23 문희·고경화·홍미영·김영숙·안명옥·박찬숙·김애실·송영선·정형근·윤원호·이계경·김송자·장복심·유승희·박순자·강혜숙·박찬석·이혜훈·조배숙·박영선·김희정·신명·진수희·이경숙·이영순·심상정·최순영·현애자·김영선·장향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천영세·단병호·심상정·노회찬·이영순·현애자·강기갑·최순영·권영길·김희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7. 2. 28 강창일·임종석·김태홍·강기정·박상돈·지병문·임종인·박찬숙·홍미영·김태년·김재윤·김우남·김낙순·이인영·정성호·이은영·박기춘·이목희·양형일·노현송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병렬 의원 대표발의)

(2007. 4. 3 선병렬·이광재·김동철·이시종·조경태·강성종·김태년·정장선·김명자·신명·유기홍·노영민·우원식·정청래·김형주·정봉주·안민석·김혁규·강혜숙·김재윤·양승조·신학용·최성·이목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

(2007. 4. 3 안택수·주성영·이계경·안상수·정종복·김양수·신상진·맹형규·박성범·이성구·황우여·정병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7. 4. 9 안상수·심재철·나경원·신상진·공성진·고조홍·이해봉·장윤석·정병국·안경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7. 4. 30 이낙연·김송자·김태홍·박재완·박찬숙·손봉숙·신상진·신중식·안상수·엄호성·유선호·이계안·이근식·이영호·이해봉·장복심·정동채·정진석·채일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07. 5. 2 유기준·이성구·공성진·신국환·고조홍·박재완·김정권·유승민·신상진·배일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7. 5. 11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7. 5. 18 이주영·박형준·이주호·엄호성·김정권·김재원·유기준·장윤석·정갑윤·김정훈·공성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7. 5. 23 정성호·강창일·송영길·유기홍·선병렬·주승용·이종걸·신명·노현송·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5. 23 신명·김현미·엄호성·유승희·이광철·이미경·이은영·장복심·장향숙·조성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발의)

(2007. 5. 28 김정훈 의원 외 127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발의)

(2007. 5. 28 장윤석 의원 외 127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발의)

(2007. 5. 28 김기현 의원 외 127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

(2007. 5. 28 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07. 5. 31 정갑윤·김양수·김정권·정희수·이낙연·권경석·정두언·이상배·이인기·김석준·최병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7. 6. 5 권영길·단병호·천영세·심상정·노회찬·현애자·강기갑·최순영·임종인·이영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

(2007. 6. 12 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

발의)

(2007. 6. 18 안상수·신상진·안택수·이성구·서재관·김명자·이영호·이인기·김재원·이경재·박상돈·정성호·오제세·김애실·엄호성·김태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7. 6. 19 정화원·남경필·신상진·진수희·정병국·정종복·권철현·현애자·최순영·이성권·장향숙·문병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

(2007. 6. 27 심재덕·이광철·노현송·최성·박상돈·이영호·강창일·김한길·박기춘·이종걸 의원 발의)

國民投票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 7. 20 정성호·김동철·김선미·노현송·이철우·김형주·신기남·서갑원·김현미·박병석·한화갑·김기석 의원 발의)

國民投票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7. 2. 26 이상열·김효석·김송자·최인기·채일병·이승희·이낙연·신중식·손봉숙·권선택 의원 발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발의)

(2007. 2. 28 이인영 의원 외 107인 발의)

選擧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4. 11. 6 송영길·조경태·복기왕·정성호·장경수·백원우·정청래·노영민·이은영·김원웅·임종석·김재윤·신기남·한명숙·김현미·안민석·이원영·이종걸·김태홍·최성·김영춘·정세균·유시민·우제창·양형일·유선호·지병문·박찬석·신중식·신학용·강창일·이미경·조정식·이상열 의원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발의)

(2007. 5. 28 주성영 의원 외 127인 발의)

政黨法 一部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05. 3. 25 송영길·김영춘·김부겸·이종걸·임종석·우상호·김현미·최재성·강기정·박영선·김영주·정청래 의원 발의)

政黨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5. 6. 8 양승조·엄호성·이강래·김춘진·선병렬·장복심·염동연·우제창·김태홍·김우남·정병국·유승희·이광철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2006. 3. 27 이상열·이낙연·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정진석·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김영덕·안경률·진수희·신학용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7 이시종·심재덕·노영민·이은영·한광원·김혁규·권선택·서갑원·오영식·우제항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남경필·이성권·권철현·심재철·김명주·정병국·정화원·고조홍·차명진·안홍준·임해규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6. 2. 2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7. 6. 13 이성권·곽성문·김석준 김정권·박형준·엄호성·이계경·이성구·이인기·정문헌·정종복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4. 9. 23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0 원혜영·김현미·김부겸·우원식·강창일·김원웅·노웅래·문학진·김명주·이은영·서갑원·송영길·김재윤·정청래·유선호·김덕규·오영식·김형주·김재홍·이기우·이인영·신기남·양형일·이호웅·이목희·우상호·유기홍·민병두·김기석·김태년·노영민·서재관·신중식·김영춘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5. 5. 3 민병두·이상민·강기정·노웅래·윤호중·정청래·이은영·김원웅·유승희·선병렬·이경숙·이광철·김재윤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05. 6. 22 신계륜·이인영·이화영·정봉주·우상호·백원우·문학진·한병도·이기우·김부겸·윤호중·최재성·김태년·임종석 의원 발의)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5. 6. 30 김충환·김재경·임인배·신상진·맹형규·황우여·이성권·김재원·유기준·유정복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6. 3. 13 이낙연·천영세·정진석·김종인·김홍일·김효석·손봉숙·신중식·이상열·이승희·이정일·최인기·한화갑·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김낙성·류근찬·신국환·이인제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8. 14 손봉숙·김효석·김태년·유승희·신중식·이정일·김홍일·이낙연·최인기·이재오·노회찬·최순영·이상열·김춘진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3 노회찬·강기갑·권영길·김종률·단병호·박명광·심상정·안영근·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배일도·장윤석·김양수·정병국·김정권·이계경·김성조·김희정·황진하·심재철·주성영·윤두환·임태희·공성진·최구식·안명옥·윤건영·박순자·정청래·정화원·신상진·차명진·이경재·김애실·정희수·김영덕·유기준·장향숙·정진섭·한병도·김영주·장복심·임종석·한광원·윤원호·이미경·우상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 9 손봉숙·김낙성·김덕규·김송자·김종인·김효석·류근찬·박찬석·신국환·안영근·유재건·이낙연·장복심·최인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7. 6. 22 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7. 7. 2 권경석·김기현·김명주·김재경·김정권·김정훈·김양수·김학원·배일도·심재덕·안홍준·이주영·정갑윤·정두언 의원 발의)

이상 138건 7월 6일 회부됨

○청원 회부

선거연령하향(만18세)조정에관한청원

(2004. 5.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후곡마을 506-1404 신정현 외 1800인으로부터 김형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재외국민참정권회복에관한청원

(2004. 10. 20 2958 Muir Trail Drive, Fullerton, CA 92833 U.S.A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외국민참정권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완흠·최병근으로부터 김덕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4. 4 서울 용산구 효창동 산 9-1 대한노인회중앙회장 안필준으로부터 김충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4.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권문용 외 36인으로부터 심재덕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5. 9. 7 인천 중구 관동1가 9-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김기성 외

1534인으로부터 이재오 의원의 소개로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7. 21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으로부터 이영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6건 7월 6일 회부됨